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50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안태준 · 문진석 · 김영진
소병훈 · 이정문 · 염태영
백혜련 · 한병도 · 정준호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제3자물류(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37에서 “제3자물류”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투자일 또는 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37(해외 물동량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외 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하 이 조에서 “해외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외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해외 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3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국내 물류기업에 지출한 비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 물동량 및 물류비용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제26조,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104조의3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7”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6(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제3자물류(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37에서 “제3자물류”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투자일 또는 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신 설>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
여야 한다.

제104조의37(해외 물동량의 제3
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이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외
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한 제3자
물류 비용(이하 이 조에서 “해
외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외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
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1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해외 물동
량을 위하여 지출한 전체 물

	<u>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u>
	<u>2.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3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국내 물류기업에 지출한 비용일 것</u>
	<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해외 물동량 및 류비용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 ----- ----- ---제26조,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104조의36제1항-----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	③ ----- -----

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④ -----

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⑪ (생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제104조의35, 제104조
의36, 제104조의37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

제104조
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
의37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

-----.

1. · 2. (현행과 같음)

3. -----

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

4. (현행과 같음)

②

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
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③ · ④ (생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4조의30, 제104조

의37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_____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
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
조의37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illegible]

(2) -----

-----제104조
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

7- ----

